

<T/F팀 A안>2009.5.11.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

제정 2009. 12.1. 경상남도조례 제000호

전 문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비롯하여 자유와 평등에 관한 천부적 인권과 다양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양심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은 학업성적, 주거지역이나 형태, 가족형태, 경제력, 출신지역이나 학교의 종류, 학년, 성별, 장애, 종교, 인종, 피부색, 용모,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학습과 자아실현에 필요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울러 학생은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학교와 사회로부터 적절하고 신속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그리고 주민들은 신나는 공교육과 자주적인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인정하며, 학생들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 관용, 박애, 헌신, 협력과 배려의 가치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무엇보다도 학생은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다.

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내지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에 관한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등(이하 교육청), 학교 등(이하 학교), 교직원 등(이하 교직원), 그리고 주민의 역할, 의무, 그리고 책임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0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종류의 것으로서 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은 제1호가 규정하는 학교에 재학하거나 퇴학처분을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라 함은 「헌법」, 여러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협약), 그리고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말한다.

제103조(적용)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 그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의 규범목적에 준중한다.

제104조(원칙) ①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와 유관기관 등 공공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교육과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가장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그리고 교직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회, 동아리 등 자치활동에 관한 학생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⑤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자유권

제201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학교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제202조(학생의 의사결정권) ①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② 재량활동, 선택과목, 보충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기타평가(사설모의고사)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칙이나 학교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학교가 교복, 앨범, 체육복 등 선정할 경우 반드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3조(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① 학생은 학생회 등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동아리를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휴휴 시설 우선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4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어떠한 체벌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폭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어떠한 노동도 강요할 수 없다.

④ 학생은 두발의 자유를 갖는다.

제205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와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학생에게 반성문이나 서약서, 지문날인, 서명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인격에 반하는 대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206조(표현, 집회, 시위의 자유) ① 학생은 표현,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복, 양말, 머리핀, 반지 등 복장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이름표착용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④ 학교축제의 내용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⑤ 학생들의 주장을 담은 홍보물은 학내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⑥ 학생은 교외 문화행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207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③ 교직원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학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208조(정보접근권) ① 학생은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얻기 위하여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휴대폰 사용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3장 평등권

제301조(평등권) ① 모든 학생은 평등하다.

② 학교의 교육재정(예산)이 모든 학급이나 동아리에 균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302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이나 나이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②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④ 학생이 그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등)의 직업이나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

다.

⑤ 학생의 용모,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303조(성차에 의한 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성차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학생들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여학생용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제304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제기는 적절하게 반영되어 기록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복지권

제401조(교육권) ① 학교와 교직원은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고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권장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수업할 때 학생들의 질문기회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⑤ 학교는 교내외 행사를 위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권과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⑥ 성적이 하위권 학생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이유로써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제402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① 학생은 쾌적한 교실환경 아래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숲을 잘 조성하여야 한다.

④ 질 높은 수업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⑤ 학교생활을 하는 데 방해되는 소음을 예방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⑥ 수도, 화장실 등 학교의 각종 시설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⑦ 체육활동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⑧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403조(급식에 관한 권리) ① 급식과 그 식자재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② 급식은 학생의 선호도 등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식자재의 안전도에 대한 검수권을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04조(안전권) ① 학생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안전을 이유로 학생활동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 때문에 학생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④ 학교는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과 함께 협조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시설물은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⑥ 자살을 예방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05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생은 자유로운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학생휴게실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 ④ 학교는 생리로 인한 공결제도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널리 교육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 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06조(적법절차와 권리실현절차의 권리) ① 학교규정은 학생징계절차를 학생인권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② 징계 받는 학생의 변론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③ 학교규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며,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2. 학생은 학생관련 제 규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학교규정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야 하고,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
 4.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 인격모독 등의 심리적 폭력,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고 학생자치기구의 개정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407조(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성차별, 성희롱 등 제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와 교직원은 학교폭력, 성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직원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서 등 외부기관과 신속하고 적절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인권보장위원회 등

제501조(학교의 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 등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의 장과 교감은 제외된다.

③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학부모위원, 시민단체위원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시민단체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관련 업무 교직원이 간사가 된다.

⑤ 학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를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학교정책 수립
2.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
4.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
5.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과 분쟁조정
6.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7.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⑥ 학교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학교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502조(교육청의 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이하 교육청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청위원회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선출직 교육위원회 추천 교육의원 2인, 교원단체 추천 1인 이상 2인 이내, 학부모단체 추천 1인 이상 2인 이내, 창원지방변호사회 추천 1인,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1인을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하며, 관련 업무 장학사를 간사로 한다.

④ 교육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를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2.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
4.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
5. 학생인권과 권리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그리고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6.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과 분쟁조정
7.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8.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육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청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⑦ 교육청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503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 학교위원회와 교육청위원회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학교위원회나 교육청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학교위원회나 교육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그리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504조(진정과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 학생의 인권과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된 경우 교육청위원회에 이를 진정하거나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청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 등의 침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최종적인 구제결정 이전에 피해 학생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련 당사자들에게 다음 각 호를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과 권리의 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중지
2. 인권과 권리의 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3. 그 밖에 피해 학생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5조(인권자료실) ① 교육청위원회는 도교육청 안에 인권자료실을 둔다.

② 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립·정리·보존하여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506조(교직원인권연수 등) ①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교직원인권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모든 직무연수에서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연수를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07조(학생인권교육) ①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인권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이나 대학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8조(인권영향평가) 교직원은 학생인권과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나 행위를 할 경우 미리 인권영향평가를 작성하거나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정책 등의 집행 후에는 인권영향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2009.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칙 등의 제정 내지 개정시한) 학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과 여러 규정을 2010년 2월 말일까지 제정 내지 개정하여야 한다.